

뉴브런즈윅 주의 인권

캐나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, 뉴브런즈윅 주의 모든 주민은 법에 의해 여러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. 이 법이 바로 뉴브런즈윅주인권법(New Brunswick Human Rights Act)입니다.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뉴브런즈윅 주 인권위원회입니다. 인권위원회는 평등을 촉진하며, 차별 및 괴롭힘에 관한 고소를 조사하고 그 해결을 위해 중재합니다.

법으로 금지된 차별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:

- 인종, 피부색
- 민족, 출신지
- 혈통(원주민, 중국계, 프랑스계 등)
- 종교
- 연령
- 혼인 상태
- 성별(임신 등)
- 성취향
-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
- 사회적 상태(소득, 학력, 직업 등)
- 정치적 신념 또는 활동

똑같은 취급에도 사람마다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차별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취급될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모든 고용인이 일정 무게의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.

고용주, 서비스 공급자, 부동산 소유주 등, 인권법을 준수해야 하는 모든 개인 및 집단은 정책, 경영 방침, 시설 및 설비 등이 법으로 금지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차별의 요소가 없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. 이것을 수용 의무라고 합니다.

적용 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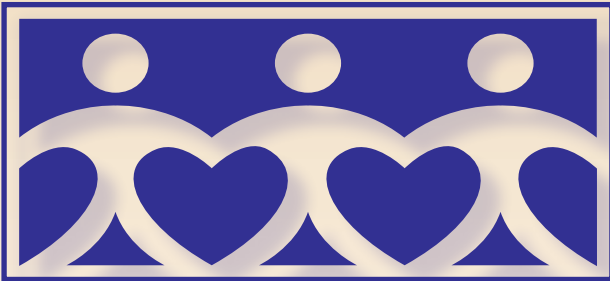
- 고용
- 공공서비스 및 공공시설
-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
- 부호, 문자 및 출판
- 전문직/실업/통상 협회 및 노동단체
- 민간 및 공공 부문

인권법에는 예외 및 제한 조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장애가 있는 고용인을 수용하면 고용주에게 과도한 어려움이 따를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.

위에 열거된, 법으로 금지된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이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.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무관합니다. 제소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, 제소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
인권위원회는 제소된 사건을 조사하고 그 해결을 위해 중재합니다. 중재를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없을 경우, 인권심리위원회(Human Rights Board of Inquiry)가 증언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. 인권심리위원회는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

뉴브런즈윅 주 인권위원회



법으로 금지된 차별의 예

- 임대주택 임대인은 미혼모, 학생, 소득보조금 수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
- 고용주는 장애로 인하여 결근했다는 이유로 고용인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.
- 고용인은 법으로 금지된 근거를 바탕으로 동료직원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.
- 학생은 법으로 금지된 근거를 바탕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.

연락처:

New Brunswick Human Rights Commission P.O. Box 6000 Fredericton, NB, E3B 5H1	Commission des droits de la personne du Nouveau-Brunswick C.P. 6000 Fredericton (N.-B.) E3B 5H1
---	--

이메일: hrc.cdp@gnb.ca

웹사이트: www.gnb.ca/hrc-cdp

무료전화: 1-888-471-2233

전화: (506) 453-2301

팩스: (506) 453-2653

TDD: (506) 453-2911